

『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허 훈입니다.

-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18호
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현행 조례는 벽보, 현수막,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
및 제거를 위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,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가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
않고 같은 조항 내에서도 불법 광고물, 불법 유동광고물
등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조례 해석과 적용시
혼선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.

- 이에, 동 개정안에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.

-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 제목 역시 기존 ‘불법 유동광고물의 방지 및 제거 등’에서 ‘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’로 변경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더 잘 담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.

- 또한,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